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94
----------	-------

발의연월일 : 2026. 6. 2.

발 의 자 : 김소희 · 김기현 · 박준태
성일종 · 김선교 · 서일준
조경태 · 김예지 · 우재준
김상훈 · 김승수 · 조배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 혼합의무 도입에 따라 글로벌 항공연료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AF 사용 확대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로 초기 시장 형성과 설비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자국 내 SAF 생산 기반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생산설비와 원료 공급망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별도의 지원 없이 의무 이행이 본격화 될 경우 수입 제

품 의존도가 확대되고 국내 정유·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현재 SAF(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재하여 국내 생산 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및 제144조제5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속가능항공유 등 수소 분야 제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2.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가 국내 공항에서 공급되어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별 법인세가 해당 과세연도 공제 총액을 넘지 못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한도를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판매수량 및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대상 판매수량의 보고, 판매가격의 산정 및 보고,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

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u> <u>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u> <u>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u> <u>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u> <u>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u> <u>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u> <u>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u> <u>“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u> <u>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각</u> <u>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속</u> <u>가능항공유 등 수소 분야 제품</u> <u>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6년 12</u> <u>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u> <u>는 경우 그 판매가격의 100분</u> <u>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u> <u>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u> <u>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u> <u>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u> <u>서 공제한다.</u> <u>1.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u> <u>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u> <u>여 제조될 것</u>

2.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가 국내 공항에서 공급되어 국제항공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에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별 법인세가 해당 과세연도 공제 총액을 넘지 못하는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생략) <u><신설></u>	<u>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한도를 정한다.</u>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판매수량 및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대상 판매수량의 보고, 판매가격의 산정 및 보고,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	---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
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
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